

#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36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21. 09. 07  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일부 자구를 수정·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“부속조형물”을 “부속조형물 등(이하 “조형물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(안 제3조제2항~제4항).

##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 중 “부속조형물”을 “부속조형물 등(이하 “조형물등”이라 한다)”이라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(이하 “조형물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조형물등”이라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전시관과 조형물 등”을 “조형물등”이라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조(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속조형물 등(이하 "조형물등"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
<p>② <u>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(이하 "조형물등"이라 한다)이 건립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③ ----- ----- <u>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(이하 "조형물등"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③ ----- ----- <u>조형물 등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<u>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<u>조형물등(이 경우는 "영구조형물"을 말한다)의 건립</u></u></p>	<p>④ ----- ----- <u>전시관과 조형물 등</u>----- -----</p>	<p>④ ----- ----- <u>조형물등</u>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 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#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(이하 “조형물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조형물등”이라 한다.

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(이하 “조형물등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&lt;신설&gt;</p> <p>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<u>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(이하 "조형물등"이라 한다)</u>이 건립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 등(이 경우는 "영구조형물"을 말한다)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	<p>제3조(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<u>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(이하 "조형물등"이라 한다)</u>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③ ----- <u>조형물등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